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JAN. 2019 **발간년월** 2019년 1월(통권 제19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심동) **발행인** 양창호 원장
Vol. 19 **감리** 황진희 본부장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시안전연구실 **홈페이지** www.kmi.re.kr

금주 Contents - 해양안전 이슈

해적피해에 대한 지역별 보고체계, 지침 및 절차 등의 개선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이행 및 참여 독려^{a)}

■ 제100차 MSC 회의(' 18.12.3~12.7)에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 등 해사 보안 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지침¹⁾ 등에 대한 회람서 개정이 승인됨

- ICS 등 7개 기관은 BMP 4의 발행 이후 개정된 해적피해 예방대응 지침(BMP 5)과 관련 최신자료를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회람하고, 기존 MSC 회람서(MSC.1/Circ.1339)에 대한 최신화 및 개정 승인을 요청함
- 2018년 6월에 개정된 해적피해 예방대응 지침(BMP 5)은 해적피해에 대한 지역별 대응 지침, 해적 대응 절차, 새로운 지역별 보고 체계 등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독일, 미국, 이란 등 대다수의 회원국이 회람서 승인을 지지함
- 특히 싱가폴 등이 회람서에 회원국의 이행 및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 삽입을 요청함에 따라 부속서에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회원국들의 해적행위방지 활동 참여를 촉구함

■ 개정된 회람서에는 최신화 된 해적행위 방지 지침 및 관련자료 등이 포함됨

- 선사, 선장 및 선원을 위한 국제 해적행위 방지 지침²⁾, 기니만 해역에서 해적 및 무장 강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서³⁾ 등 최근 새롭게 개정된 해적행위 대응예방 지침 및 해적피해 대응관련 웹사이트 정보 등을 공유함
- 이를 통해 선박, 선사 및 선원 등에 대한 해상 보안 위협을 완화하고, 해상안전 및 보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1) 국제해운단체 등이 마련한 해적피해예방대응 지침(BMP, Best Management Practices to Deter Piracy and Enhance Maritime Security in the Red Sea, Gulf of Aden, Indian Ocean and Arabian Sea)으로 MSC 89차 회의(에서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최신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근 2011년 9월 BMP4가 승인됨

2) Global Counter Piracy Guidance for Companies, Masters and Seafarers (2018.6월)

3) Guidelines for protection against piracy and armed robbery in the Gulf of Guinea region (Version 3, 2018.6월)

국제적으로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및 정보 제공 중^{b)}

- ReCAAP 산하의 ISC(정보공유센터)⁴⁾에서 지속적으로 ReCAAP 추진사항 및 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 및 무장강도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함
 - 해사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활동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아시아 해역의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BIMCO, ICS 등이 협업하여 ‘Maritime Global Security’ 웹사이트⁵⁾ 운영 개시
 - 해적행위, 사이버보안 등에 관한 최신 지침 및 정보 등을 공유하여 해적행위 등 위험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있음

전 세계 해적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해상 보안강화를 위한 근원적인 개선 성과 미흡^{c)}

-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공격 건수는 10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3%(87건)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아프리카 해역의 피해가 급증함
 -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공격은 2건으로 전년(7건) 대비 71.1% 감소하였으나,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공격은 46건으로 전년(20건) 대비 130% 급증함
 - 상반기 선박 피랍사고 역시 베냉(2척), 가나(1척), 나이지리아(1척) 해역에서 발생함

<연도별 해적사고 발생 건수(2014-2018)>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세계	연간	245(21)	246(15)	191(7)	180(6)	-
	상반기	해적공격(선박피랍)	116(10)	134(13)	98(5)	87(4)
소말리아		9	0	1	7	2
서아프리카		23	21	30	20	46
아시아		80	107	54	43	43
기타		9	13	32	31	16

* 참고자료: 해양수산부(2018),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보고서, p.1

4) ReCAAP(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 in Asia) 산하에 ISC(정보공유센터)를 두어 동남아 권역 해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음

5) Maritime Global Security(www.maritimeglobalsecurity.org)

■ 해상 보안강화를 위한 근원적인 개선 조치의 한계가 나타남

- 선사의 대응력 강화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해 전 세계 해적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임
- 그러나 해적의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 등으로 해적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치명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나타남
- 또한 해적피해 예방대응 지침(BMP 5)은 선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예방적 권고사항으로, 실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국가보안기관 및 행정기관 등 10개 기관이 협력하여 해적행위 피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역할 수행^{c)}

■ 2018년 4월, 해적행위 등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 을 수립함

- 「국제 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⁶⁾에 따라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종합 대책을 통해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해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국가보안기관 및 행정기관 등 10개 기관(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협의회⁷⁾를 운용 중임
- 10개 기관별 해적행위 피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책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음

6) 제6조(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적행위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 및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4.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제8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① 국제 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의 수립·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3. 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기관별 책무 및 역할>

기관명	책무	역할
기획 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법)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에 관한 사무 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심의 및 편성) 해적피해예방 관련 정보수집, 국제기구 기여금, 해외파병 지원, 해상특수경비업 관리 등에 관한 예산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법) 국제경제협력외교,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 조사분석 등 사무관장 (해적피해예방법) 해적행위 등의 근절 및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적사고 접수) 해외 현지공관 등을 통해 해외 발생 해적사고의 접수 및 정보 전파 (해적피랍사건 총괄) 「선박 피랍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황 총괄 대처 및 조정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법) 검찰·행정·인권옹호·출입국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사법공조 지원) 해적행위 관련 수사 지원 (출입국 지원) 해적사고 발생시 피해 복구, 최소화를 위한 관련자 출입국 지원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적피해예방법) 우리 국제항해선박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군 등의 국외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파병) 우리 국제항해선박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해외 해역에 함정 파견
행정 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법)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등 (재난안전법) 국내 대규모 재난 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적행위 피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
해양 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적피해예방법)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 대책 및 피해예방요령 수립 및 시행, 해적 행위피해예방협의회 구성 및 총괄 (해적피해예방법)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예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적행위피해예방요령 수립) 위험해역 등의 진출입시 조치사항, 국제 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해적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선사의 자체대책 수립 점검 및 지원) 자체대책에 대한 보완 요구 및 정보 제공
국가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법)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사무 관장 (해적피해예방법)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 대책 사전협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수집)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해적세력 및 연계된 테러단체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적피해예방법)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 대책 사전협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관에 관한 정책)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국내 통관절차 사항 등 총괄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적피해예방법)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 대책 사전협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기류 관리에 관한 정책) 국내 무기류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관
해양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적피해예방법)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 대책 사전협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적 관련 형사업무) 해적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와 업무 공조 (정보 수집 등) 외국 해양경찰기관과의 해적관련 정보수집 및 협력

* 참고자료: 해양수산부(2018), 해적행위 피해 예방 종합대책(안), pp.11-20

해상 보안 산업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c)}

■ 최신화 된 해적행위 방지 지침 및 정보 자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해적피해 예방대응 지침(BMP 5), 선사, 선장 및 선원을 위한 국제 해적행위 방지 지침, 기니만 해역에서 해적 및 무장 강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서 등 최근 새롭게 개정된 국제지침을 국내 선사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장, 선원 및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해상특수경비업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홍보 및 관련 교육·훈련 시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해적피해예방법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에 따라 위험해역 등을 통항하려는 국제 항해선 박 등과 선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여건 악화로 해상보안 산업의 개선은 불투명한 실정임
- 육해상경비업 병행, 타사업 연계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의 교육·훈련의 지속적인 확대 개편이 필요함

박혜리 전문연구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hrpark@kmi.re.kr / 051-797-4629)

참고자료

- a) <https://docs.imo.org/Category.aspx?cid=49> (2019.01.03. 검색)
- b) <http://www.shipowners.or.kr/admin/bbs/down.php?code=business&idx=13276&no=2> (2019.01.07. 검색)
- c) <http://www.mof.go.kr/iframe/article/multi02/view.do?boardKey=25&articleKey=21513&searchCategory=&searchSelect=&searchValue=&searchDeptName=&searchStartDate=&searchEndDate=¤tPageNo=1> (2019.01.03. 검색)